

OECD의 사회보장비에 관한 통계작성기준의 고찰

高敬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임연구원

1. 서론

OECD의 사회보장비(Social Expenditure)¹⁾ 통계는 우리나라 복지부문의 통계에 해당한다. 현재 OECD는 회원국으로부터 87개 부문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사회보장비는 이 중의 하나이다. OECD에서는 사회보장비를 “공공 또는 민간부문이 빈곤에 처한 가구 또는 개인에게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물 또는 현금급여”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비의 범위는 정부(중앙, 주, 지방정부 포함)와 고용주가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재원이다.

1) OECD에서 사용하는 Social Expenditure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수당, 기업주가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육아휴직과 퇴직금,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지출된 총재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명확히 지칭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용어는 없으나, 오늘날의 사회보장은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생활보장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Social이란 ‘복지’, ‘사회보장’을 의미하고 있어 여기에서는 ‘사회보장비’로 부르기로 한다.

현재 OECD에서는 고용주의 임의적인 사회지출비를 제외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들 항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가 요구하고 있는 사회보장부문의 통계작성기준을 알아보고, 이 기준에 따른 한국의 통계생산 현황을 살펴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OECD의 통계작성기준에 부합하는 우리나라의 통계에는 무엇이 있으며, 제도의 미도입으로 생산되지 않는 통계에는 무엇이 있는가, 더 나아가 우리의 사회보장제도가 몇 개의 행정부처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사회보장비 통계항목의 개념과 한국제도

OECD에서는 사회보장비의 통계항목을 13가지로 대분류하여 각각의 통계작성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통계를 생산토록 권고하고 있다. 그 대상통계들을 유사내용별로 묶어 살펴보면, ① 노령·폐질·사망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을 보장하

기 위하여 지급되는 노령·장애·유족급여, ② 질병으로 인한 소득단절이나 의료비 지출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질병·보건급여, ③ 노동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나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중단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노동재해급여, ④ 실업으로 인한 소득중단에 대하여 일정소득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업급여, ⑤ 자녀 또는 기타 피부양자가 있는 가족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가족급여, ⑥ 노인과 장애인 및 가족단위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서비스, ⑦ 신규취업자, 실업자 그리고 장애인의 취업지원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⑧ 저소득계층에게 지원하는 임대보증금 등의 주거급여, 그리고 ⑨ 어떤 사정으로 위의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사람에게 지출되는 기타급여 등이 있다. 이러한 13개의 사회보장부문은 42개의 관심영역과 41개의 세부관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작성하여야 할 사회보장비의 통계항목수는 부문에서 세부관심영역까지의 항목수를 더한 총 96개이다(표 1 참조). 하지만 이러한 분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는 OECD의 분류체계에 따른 사회보장비 통계항목의 개념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1. OECD 사회보장비 항목의 분류 (1996년 기준)

부 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1. 노령연금 급여	1.1 일반노령연금	1.1.1 개인급여 1.1.2 배우자보충급여 1.1.3 아동보충급여
	1.2 노령공무원연금	
	1.3 재향노령연금	
	1.4 기타노령연금급여	
	1.5 조기퇴직연금	
2. 장애연금 급여	2.1 장애연금	2.1.1 개인급여 2.1.2 배우자보충급여 2.1.3 아동보충급여
	2.2 장애공무원연금	
	2.3 장애아동연금	
	2.4 장애재향군인연금	
	2.5 기타장애연금 급여	
3.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급여		
4. 질병급여		
5. 노인과 장애인 복지 서비스	5.1 시설보호	5.1.1 아동 5.1.2 65세미만의 성인 5.1.3 65세이상의 성인
	5.2 가정봉사서비스	5.2.1 아동 5.2.2 65세미만의 성인 5.2.3 65세이상의 성인
		5.3 주간보호와 재활 서비스
	5.4 기타현물급여	5.4.1 아동 5.4.2 65세미만의 성인 5.4.3 65세이상의 성인
6. 유족급여	6.1 유족연금	6.1.1 배우자연금 6.1.2 고아연금 6.1.3 기타연금
	6.2 유족공무원연금	
	6.3 유족현물급여	
	6.4 기타유족연금급여	
7. 가족연금 급여	7.1 아동에 대한 가족 수당	
	7.2 가족지원급여	
	7.3 기타 피부양인	
	7.4 편부모	
	7.5 기타가족	
	7.6 육아휴직	

표 1. 계속

부 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8. 가족복지 서비스	8.1 공식주간보호 8.2 개인서비스 8.3 가족서비스 8.4 기타	
9. 노동시장의 활성화 프로그램	9.1 노동시장의 교육 9.2 신규취업자를 위한 프로그램 9.3 고용장려를 위한 프로그램 9.4 장애인을 위한 고용 프로그램 9.5 고용서비스와 행정	9.1.1 현금 9.1.2 서비스 9.2.1 현금 9.2.2 서비스 9.3.1 현금 9.3.2 서비스 9.4.1 현금 9.4.2 서비스
10. 실업급여	10.1 실업보상 10.2 노동시장의 이유로 인한 조기퇴직 10.3 퇴직수당	
11. 보건부문 급여	11.1 보건부문의 공공지출	
12. 주거급여	12.1 임대보조 및 현금급여	12.1.1 노인 12.1.2 장애인 12.1.3 가족 12.1.4 기타
13. 기타급여	13.1 저소득 13.2 빈곤한 자 13.3 기타 13.4 이민자 및 망명자	13.1.1 현금급여 13.1.2 서비스 13.2.1 현금급여 13.2.2 서비스 13.3.1 현금급여 13.3.2 서비스 13.4.1 현금급여 13.4.2 서비스

자료: OECD,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17, 1996.

가. 노령현금급여 (Old Age Cash Benefits)

노령현금급여란 퇴직근로자에게 임금대체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제반 현금적 급여를 의미한다. 본 급여는 일정연령(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후 노동시장에서 퇴직한 경우의 대체소득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조기퇴직자는 실업수당이나 다른 수

노령현금급여에 대한 우리나라 제도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공무원연금과 사립교직원연금의 퇴직연금, 그리고 군인연금의 퇴직연금제도를 들 수 있다.

당에 포함되기 때문에 본 급여에서 제외하고 있다. OECD에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노령현금급여의 5개 관심영역에 대한 우리나라 제도를 비교하여 보면, 일반 노령연금(1.1)에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노령공무원연금(1.2)에는 공무원연금과 사립교직원연금의 퇴직연금을, 그리고 재향노령연금(1.3)에는 군인연금의 퇴직연금제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기타노령현금급여(1.4)와 조기퇴직연금(1.5)의 2개 영역에 대해서는 관련제도가 없다.

나. 장애현금급여 (Disability Cash Benefits)

장애현금급여란 노동시장에서 활동할 수 없는 완전 혹은 부분장애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현금급여를 의미한다. 이때 장애란 선천성 장애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애를 뜻한다. 따라서 현물급여의 경우는 본 급여항목에서 제외되며 이는 ‘노인과 장애인복지서비스(5)’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질병으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도 본 급여에서 제외하며 이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급여(3)’로 분류하고 있다. OECD의 분류기준에 의한 우리나라의 제도를 비교해 보면, 장애연

금(2.1)에는 국민연금 및 사립교직원연금의 장애연금,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장애인수당 및 국가보훈사업의 상이연금이 실시되고 있다. 장애공무원연금(2.2)에는 공무원연금의 장애연금을, 장애재향군인연금(2.4)에는 군인연금의 퇴직연금제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연금(2.3)과 기타장애현금급여(2.5)는 아직 실시되고 있지 않다.

**다.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급여
(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급여란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 인해 피해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모든 현금급여를 의미하며 예로서 유급질병휴가, 특별수당 그리고 연금 등을 들 수 있다. OECD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급여의 관심영역과 세부관심영역은 없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제도로는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상병보상연금과 휴업급여가 있다.

라. 질병급여(Sickness Benefits)

질병급여란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제외한 일반질병으로 인한 상병기간 동안의 소득중단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한다. 위의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급여와 마찬가지로 OECD에서는 질병급여에도 관심영역과 세부관심영역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질병급여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마. 노인과 장애인복지서비스(Services for Elderly & Disabled People)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 주거시설(예, 양로원), 가정봉사원제도, 재활시설 서비스 그리고 기타 현물급여 등에 지출되는 사회보장비를 의미한다. OECD 분류기준에 의한 우리나라의 제도를 비교해보면, 시설보호(5.1)에는 공공부조의 시설보호(수용시설)를, 주간보호와 재활서비스(5.3)에는 복지시설(재활원 포함)의 운영을, 그리고 기타현물급여(5.4)에는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제공을, 가정봉사서비스(5.2)에는 가정봉사원제도와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정부지원금을 받아 사회복지관(민·공기관 포함) 등에서 운영되는 여러 프로그램중의 하나이지만 통계생산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왜냐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별로 소요된 금액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 유족급여(Survivors)

각국에서는 가구주의 사망시 배우자와 피부양가족에게 현금 또는 현물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비가 유족급여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제도를 살펴보면, 유족연금(4.1)에는 국민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유족연금을, 유족공무원연금(4.2)에는 공무원연금, 사립교직원연금 그리고 군인연금의 유족연금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유족현물급여(4.3)와 기타유족현금급여(4.4)는 실시되고 있지 않다.

사. 가족현금급여와 가족복지서비스 (Family Cash Benefits and Family Services)

가족현금급여와 가족복지서비스는 가족 단위(독신가구 제외)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현금급여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자녀양육비나 기타 피부양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비를 포함하고 있다.

OECD의 분류기준과 우리나라의 제도를 비교해 보면, 가족현금급여(7)에는 가족구성원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국민연금의 가급연금이 있다. 이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2명이내의 자녀,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가 있는 경우 그 사람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에게 시행되는 아동과 부양노인에 대한 가족수당은 공무원 가족에게만 제한되어 있으며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볼 수 없는 만큼 OECD가 요구하는 가족현금급여로 보기 힘들 것이다. 또한 각 직장에서 지급하는 가족수당도 명목상의 수당이므로 가족현금급여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가족수당(7.1), 가족지원급여(7.2), 그리고 독신부모에 대한 현금급여(7.4)에는 가급연금을 들 수 있으나, 기타 피부양인에 대한 현금급여(7.3)와 기타가족에 대한 현금급여(7.5)는 없는 제도이다. 육아휴직(7.6)에는 출산유급휴

가족현금급여와 가족복지서비스는 가족단위(독신가구 제외)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현금급여 또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자녀양육비나 기타 피부양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비를 포함하고 있다.

직이 있다. 60일의 유급휴직에 대한 재원은 고용주가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가족복지서비스(8)는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실시되고 있다. 공식주간보호(8.1)에는 여성복지시설운영(모자보호시설 등)과 아동보호시설운영(영아시설, 육아시설, 기타 아동보호조치 등)이 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8.2)와 가족서비스(8.3)에는 가정봉사원제도와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있다. 이 제도는 앞의 가정봉사서비스(5.2)와 같이 본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소요된 실제 금액을 산출할 수가 없어 통계생산을 할 수 없다. 기타부문(8.4)에는 관련 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

아. 노동시장 활성화 프로그램(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노동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에는 교육비를 제외한 노동시장 활성화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사회보장비가 해당된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신규취업자와 실업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소득능력을 증가시키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급여의 종류에는 신규취업자를 위한 공공직업사업, 노동시장의 훈련, 실

업자에 대한 고용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특정프로그램이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활성화 프로그램은 고용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시장의 교육(9.1)에는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직업훈련 및 기능인력양성제도가 있으며, 고용장려를 위한 프로그램(9.3)에는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공공부조의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사업이 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9.4)에는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의 직업훈련과 고용촉진조치 그리고 심신장애자복지를 위한 보호고용제도가 있다. 또한 고용서비스와 행정(9.5)에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을 들 수 있으며 신규취업자를 위한 프로그램(9.2)에는 아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자. 실업급여(Unemployment)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소득중단을 보상하는 차원의 모든 현금급여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노동시장에 의해 조기퇴직하는 경우 연금수급 연령 이전이라도 연금을 수급할 뿐만 아니라 해고시 퇴직수당을 지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실업급여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제도로는 고용보험과 법정퇴직금제도가 있다. 실업급여의 첫 번째 관심영역인 실업보상(10.1)에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는 타의에

의하여 실직을 당한 경우에 국한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실업보상(10.1)과 노동시장의 이유로 인한 조기퇴직급여(10.2)를 분리하여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실업보상과 조기퇴직급여를 통합적으로 작성할 수밖에 없다. 퇴직수당(10.3)에는 각 사업장의 법정퇴직금제도가 있다. 이는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고용주의 일방적 재원부담에 의하여 퇴직후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차. 보건부문급여(Health)

보건부문급여에서는 전체 보건부문이 아니라 공공보건부문만 포함하므로 민간 보건비용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여기서 공공이라 함은 중앙 및 지방당국, 보건위원회와 사회보험기관을 의미한다. 본 급여에는 입원환자치료, 외래진료 및 의약품지불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OECD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보건부문급여의 관심영역에는 보건부문의 공공지출(11.1)이 있으며 세부관심영역은 설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도를 살펴보면, 보건부문 급여에는 의료보험과 공공부조제도를 들 수 있다. 의료보험에는 직장, 공무원·교직원 그리고 지역의료보험이 있으며, 급여의 종류로는 입원, 외래 그리고 약값 등에 따른 급여를 들 수 있다. 또한 공공부조의 의료보호제도를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국가보훈 그리고 재해구호가 있다.

카. 주거급여(Housing)

주거급여란 저소득계층의 주거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에게 지원하는 임대보조금 또는 기타 현금급여를 의미한다. 이의 관심영역에는 임대보조 및 현금급여(12.1) 하나만 있다.

한편 중앙정부가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지방정부나 비영리조직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이 기관들이 받을 책정임대료가 낮아질 경우, 이 지원금에 대하여 OECD에서는 새로운 관심영역의 설정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은 통계생산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주거급여는 우리나라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제도이다.

타. 기타급여(Other Contingencies)

기타급여란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정기적인 사회보장프로그램에서 제외된 사람 또는 다른 급여 프로그램으로 당사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제도를 살펴보면, 저소득(13.1)과 빈곤한 자(13.2)에는 공공부조사업을, 기타(13.3)에는 공무원 및 사립교직원 연금의 임대주택공급과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공급 등이 있다. 이민자 및 망명자(13.4)에는 귀순북한동포보호제도가 있다. 여기에는 정착금, 보로금, 주거지원, 교육보호, 의료보호,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현금급여 또는 서비스제도가 포함된다.

OECD에서 요구하는 사회보장부문의 통계는 13개 부문의 총 96개 항목이며, 그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 11개 부문은 통계생산이 가능하다.

3. 한국의 통계생산 현황과 문제점

OECD의 통계작성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통계생산 현황은 <표 2>와 같다. OECD에서 요구하는 사회보장부문의 통계는 13개 부문의 총 96개 통계항목이며 그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계생산이 가능한 부문은 11개이다. 통계생산을 할 수 없는 2개의 부문으로는 질병급여(4)와 주거급여(12)가 있는데 이는 제도의 미도입에 연유하고 있다. 나아가 현재 통계생산이 가능한 11개 부문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수준에서 볼 때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관심영역과 세부관심영역등 구체적인 부문에 대한 통계가 제대로 생산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아직 선진국의 수준에 비해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일례로 이미 실시되고 있는 4대 사회보험은 적용범위가 협소하여 전체 국민이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내용이 부실하고 생활보호사업의 급여나 사회복지사업의 보호내용이 미약하여 세부 통계항목을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OECD에서는 사회보

표 2. 사회보장비 통계에 대한 한국의 생산현황 및 기관: 관심영역별

사회보장비 통계항목	생산 현황								
		복지부	노동부	총무처	보훈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건·교부
1. 노령연금급여									
1.1 노령연금	O	O							
1.2 노령공무원연금	O			O	O				
1.3 재향노령연금	O						O		
1.4 기타노령연금급여	X								
1.5 조기퇴직연금	X								
2. 장애연금급여									
2.1 장애연금	O	O	O		O	O			
2.2 장애공무원연금	O			O					
2.3 장애아동연금	X								
2.4 장애재향군인연금	O						O		
2.5 기타장애연금급여	X								
3.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급여	O		O						
4. 질병급여	X								
5. 노인과 장애인 복지서비스									
5.1 시설보호	O	O							
5.2 가정봉사서비스	△	△							
5.3 주간보호와 재활서비스	O	O							
5.4 기타현물급여	O	O		O					
6. 유족급여									
6.1 유족연금	O	O	O						
6.2 유족공무원연금	O			O	O	O			
6.3 유족현물급여	X								
6.4 기타유족연금급여	X								
7. 가족연금급여									
7.1 아동 - 7.5 기타가족	▲	▲							
7.6 육아휴직	O(E)		O(E)						
8. 가족복지서비스									
8.1 공식주간보호	O	O							
8.2 개인서비스	△	△							
8.3 가족서비스	△	△							
8.4 기타	X								

표 2. 계속

사회보장비 통계항목	생산 현황									
		복지부	노동부	총무처	보훈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건·교부	
9. 노동시장의 활성화 프로그램										
9.1 노동시장의 교육	O		O							
9.2 신규취업자를 위한 프로그램	X									
9.3 고용장려를 위한 프로그램	O	O	O							
9.4 장애인을 위한 고용 프로그램	O	O	O							
9.5 고용서비스와 행정	O		O							
10 실업급여										
10.1 실업보상 - 10.2 조기퇴직	▲		▲							
10.3 퇴직수당	O(E)								O(E)	
11. 보건부문급여										
11.1 보건부문의 공공지출	O	O								
12. 주거급여										
12.1 임대보조 및 현금급여	X									
13. 기타급여						O				
13.1 저소득 - 13.2 빈곤한 자	▲	▲								
13.3 기타	O				O		O			O
13.4 이민자 및 망명자	O	O								

주: O : 현재 생산되고 있는 통계임.

X : 제도 미도입

△ : 현재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통계생산은 힘들.

▲ :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통계항목의 세분 불가능함.

O(E):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통계생산은 추계치에 의존해야 함.

장재원을 법률에 의하여 고용주가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민간부문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육아휴직, 퇴직수당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의 공식적인 통계생산이 제대로 시도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OECD가 요구하고 있는 사회보장부문의 통계중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통계항목수는 몇 개나 되며, 그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가능한 통계항목수는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자. 총 96개 항목중 보건복지부가 담당하여야 할 통계는 37개 항목(39%)이며 나머지 59개 항목은 타기관의 소관통계로 노동부, 총무처, 보훈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그리고 건설교통부 등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통계는 22개 항목으로 이는 요구통계의 22.9%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

구나 타기관에서 현재 생산하는 통계항목까지 포함하여도 총 34개 항목(35.4%)밖에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 수준에 부응하는 정도의 통계항목과 통계기법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과 전담부서의 설치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4. 정책제언

OECD가입과 관련하여 우리는 국제통계작성 기준에 따라 국내통계를 생산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의 OECD국가와 비교 가능한 기본자료를 생산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방법, 통계분류의 국제화를 추진함으로써 통계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관계로 전산화나 전산망도 각 사회보험제도별로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다. 공적연금의 경우 특수직역연금(군인제외)은 전산망이 본부에만 구축되어 있는 반면, 국민연금은 전국에 걸쳐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 지방사업소 46개소, 산재보험의 경우 지역본부 6개소와 지방사무소 40개소를 연결하는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다. 그리고 의료보험의 경우, 공무원·교원의료보험은 전국에

걸쳐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으나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은 조합별로 단독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수직역연금과 직장·지역의료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보험 제도는 전국적 단위의 독자적인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개별기관별로 통계작성기준이 상이하여 통계생산물에 대한 활용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행정 업무의 능률화와 국제적 수준의 통계생산을 위하여 각 사회보험제도간의 상호연계를 통한 정보망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이러한 방안은 통계의 중복생산 또는 누락의 문제를 방지하여 비용의 절감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여러 행정부처(공단포함)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부처들은 특정한 영역에 대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OECD요구의 통계생산에 대한 주무부처로서 타부처에게 업무영역별로 통계생산을 의뢰하고 취합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끝으로 국제통계생산을 위하여서는 보건복지부의 강한 의지만큼이나 사회보장과 관련된 기타 행정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